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7월 7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보장을 위해 위원의 연령요건 하향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고, 주민총회 개최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총회를 마을축제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(場)으로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잘못된 법률명칭 정정 및 불분명한 용어, 문장구조를 명확하게 고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(안 제1조, 제6조, 제7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, 제23조, 제26조)
- 나.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(안 제6조, 부칙 제2조)
- 다.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개정에 따른 위원 연령요건 하향 및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자격 개방(안 제7조)
- 라. 위원 모집정원보다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적을 경우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, 위원모집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근거 규정 마련(안 제8조제3항, 제8조제4항)
- 마. 주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한하여 기념품 및 경품 등 제공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8항)
- 바.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타 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노력 의무 부여(안 제22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7월 7일 ~ 7월 14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지방분권법’이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

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협의업무 :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
제7조제1항 중 “만 19세 이상”을 “만 18세 이상”으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

제7조제2항제5호 중 “제14조 제1항 제4호의” 를 “제14조제1항제4호의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
2.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·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, 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

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또는 추천받은 사람이 위원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공개추첨을 하지 않고 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④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② 관리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서” 는 “③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서” 로 하고, “제8조 제1항의” 는 “제8조제1항의” 로 한다. 같은 조 제3항 중 “③ 관리위원회는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” 는 “④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” 로 하고, 제4항 중 “④ 관리위원회는” 은 “⑤ 관리위원회는” 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는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법” 은 “특별법” 으로 하고, “제60조제1항 제7호에” 는 “제60조제1항제7호에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 중 “법” 은 “특별법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위원에게” 는 “주민자치회는 위원에게” 로, “연서(連書)로 주민자치회에 해당” 은 “연서(連書)로 해당” 으로, “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” 은 “재적위원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자치회장은” 은 “회장은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7조 제1항” 은 “제7조제1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,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자치회장은” 을 “회장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업무를” 을 “제6조의 업무를” 으로 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,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 제2조 중 “이 경우 폐지된”은 “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폐지된”으로,
“정관·재산 등을 승계된”은 “기능·재산 등을 승계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<u>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</u>」(이하 ‘<u>지방분권법</u>’ 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<u>협의업무 :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</u></p>	<p>제6조(기능) ----- 「<u>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</u>」(이하 ‘<u>특별법</u>’ 이라 한다) ----- -----</p> <p>1. <u>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자치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협의업무 :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</u></p>
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<u>만 19세 이상</u>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----- -----<u>만 18세 이상</u>----- -----</p>

<p>1.~3.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~4. (생 략)</p> <p>5. <u>제14조 제1항 제4호의</u> 사유로 해촉된 사람</p>	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14조제1항제4호의</u> ----- -----</p>
<p>제8조(위원의 선정) ① (생 략)</p> <p>1. <u>공개모집에 신청하고,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</u></p> <p>2. <u>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, 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받고,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위원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</u></p> <p>2. <u>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·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, 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또는 추천받은 사람이 위원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 공개추첨을 하지 않고 전원을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9조(추첨관리위원회) ①~② (생 략)</p> <p>② <u>관리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8조 제1항의 각 호별</u></p>	<p>제9조(추첨관리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서 ----- ----- 제8조제1항의 -----</u></p>

<p>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.</p> <p>③ <u>관리위원회는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</u>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관리위원회는</u>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</p>	<p>----- -----</p> <p>④ <u>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<u>관리위원회는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위원의 대우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<u>예산의 범위</u>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위원의 대우) ----- ----- <u>예산의 범위</u> <u>내에서</u> -----.</p>
<p>제13조(위원의 의무) ① (생략) ② 위원은 <u>별</u>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<u>제60조제1항 제7호</u>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</p>	<p>제13조(위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특별법</u> ----- ----- <u>제60조제1항제7호</u> ----- -----</p>
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~② (생략)</p> <p>1. <u>별</u>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에게</u>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<u>연서(連書)</u>로 <u>주민자치회에</u>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 할 수 있으며, <u>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</u>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특별법</u> ----- -----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주민자치회는 위원에게</u> ----- ----- <u>연서(連書)로</u> 해당 ----- -----, <u>재적위원</u> ----- -----</p>

<p>제16조(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자치회장은</u>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회장은</u> ----- -----</p> <p>③ <u>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8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<u>제7조 제1항</u>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<u>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8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7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19조(회의) ①~④ (생략)</p> <p>⑤ <u>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9조(회의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20조(주민총회) ①~⑦ (생략)</p> <p>⑧ <u>의사 정족수, 참여 연령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0조(주민총회) 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<u>주민자치회는 제4항의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2조(행정·재정적 지원 등) ① (생략)</p>	<p>제22조(행정·재정적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 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 (생략)</p>	<p>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,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① 회장은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제6조의 업무를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6조(운영세칙)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6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,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
<p>부칙<제1721호, 2019.10.1.>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「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한다. 이 경우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·재산 등을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.</p>	<p>부칙<제1721호, 2019.10.1.>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폐지된 ----- 기능·재산 등을 승계하는 -----</p>